



Briefings of ILO 4th STC

MLC (05 -13 May 2022)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7-22

(For STC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Newsflash of 4th STC MLC

ILO 해사노동협약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이하 "STC")가 2022년 5월 05일부터 13일까지 대면 및 원격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STC 주요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차기 제110차 국제노동총회(22.5.27~6.11)에서 승인된 후 발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된 선원의 송환 (의제 3-송환 / 선원 및 선주그룹 제안)

- 유기된 선원의 송환을 위하여 우선 선박 체류 국가의 선원을 고용하고, 해당 적격 선원이 없는 경우 다른 국적 선원을 고용하여 선원 교대를 실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됨(A2.5.1, para 8)
- 회원국의 신속한 송환 및 선원교대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최종의결 및 채택

2. 선박·항만에서 선원에 무료 인터넷 제공 (의제 6-통신 / 선원그룹 제안)

- 선박-육상 간 통신에 선원의 무료접속 권한*, 권한당국은 개별 인터넷 접속 시간에 대한 지침 제공, 회원국이 항만 및 정박지 내 무료 인터넷 접속권을 제공하는 개정안(강행규정)을 제안 (A3.1, para 17 개정 및 B3.1.11, para 4삭제)
* 기존의 선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 기반의 전화, 이메일 접속 등 현행조항 삭제
- 선박·항만과 묘박지에서 비용이 부과될 경우에는 합리적 비용으로 실행가능한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의무규정→권고) 최종의결 및 채택



No. IMO-0007-22

(For STC only 1 step as Flash)

3. 선원 거주지까지 선주측 송환의무 확대 (의제 8-송환 / 선원그룹 제안)

- 선원의 송환 목적지(거주지 포함)까지의 임금, 수당, 숙식, 송환비용의 선주부담을 강행 규정화하는 개정안 제안(A2.5.1, para 3(a)(b), para 6(a)(c))
- 송환의무의 내용인 숙식과 의료관리 등의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송환 목적지를 선원의 '거주국'에서 '거주지'까지로 확대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코로나 등과 같은 상황에서 선주의 무한 책임 부담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제5차 STC 에서 동 사안을 다루기로 함

4. 선원 유기 재정보증기간 확대 (의제 10-재정보증 / 선원그룹 제안)

- 유기된 선원에게 보장하는 임금체불 및 기타의 권리(유기구제보험)에 대한 선박소유자측 보증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A2.5.2 para 9(a))
- 주요 국가의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으로 선원그룹이 개정안을 철회, 향후 동 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구성·논의기로 합의
* 작업반은 최근 일어나는 팬데믹 등으로 인한 선원의 장기 유기 문제를 개정안 발표전까지 검토 예정(작업반 운영은 STC Officer 가 논의 후 공지)

5. 회원국의 선원 사망사고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화 (의제 11-선원의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 정부그룹 제안)

- 권한당국(회원국)이 해상에서 선원 사망사고를 분류(질병, 자연사, 추락, 자살 등)하여 국제노동기구에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안 제안(A4.3. para 5(a))
- 자국 선박의 선원 등 모든 종사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매년 국제노동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최종의결 및 채택



Briefings of ILO 4th STC

MLC (05 -13 May 2022)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7-22

(For STC only 1 step as Flash)

6. 최대승무기간의 명확화(현 12개월→ 11개월) (의제 12-최대승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정부그룹 제안)

- 최대승선기간(승선실습 포함) 12개월 미만을 11개월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고, 기국 및 항만국 검사시 최대승선기간을 확인토록 제안(Standard A2.4., para 3 / Standard A2.5.1, para 1(d),2(b) / Appendix 등)
- 현행 협약은 최대승선근무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나 ILO 는 11개월로 해석하여 PSC 등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개월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에 대한 이견의 발생으로 차기 제5차 STC 에서 동 사안을 다루기로 함.<끝>

General Manager of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P.I.C:

KIM Seoyul / Principal surveyo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Tel: +82 70 8799 8344

Fax: +82 70 8799 8319

E-mail: kr-dmlc@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